

법무 규정

[제정 2021. 10. 28. 사규 제2021-56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관광공사의 소송, 법률자문 등 법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과 적절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한국관광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의 소송 수행과 법률 자문은 관련 법령, 정관 또는 다른 규정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② 사장은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정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소송”이란 한국관광공사(이하 “공사”라 한다)가 당사자 또는 당사자에 준하는 법률적 지위에서 수행하는 다음 각 목의 절차를 말한다.
 - 민사소송, 행정소송 등 법원의 본안 판결 절차
 - 「중재법」에 의한 중재 절차
 - 「민사조정법」에 의한 조정절차
- “법무부서장”이란 「직제규정시행세칙」에 따라 공사 소송업무를 총괄 하는 부서(이하 “법무부서”라 한다)의 장을 말한다.
- “소관부서장”이란 사건 발생의 원인이 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이하 “소관부서”라 한다)의 장을 말한다.

제2장 소송업무의 수행

제4조(분쟁의 예방) ① 소관부서장은 소관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법적인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② 소관부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요 사안이 발생한 경우에 법무부서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감사직무규정」 등에 따라 감사·조사 중이거나 「징계규정」에 따라 징계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예상 소가 10억원 이상의 법적 분쟁이 예상되는 사안
- 공사에 중대한 손실을 야기할 수 있는 사건사고의 발생
- 그 밖에 공사의 경영상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으로 소관부서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안

제5조(소송의 수행) ① 소송은 소관부서장의 의뢰에 의하여 법무부서장이 수행한다. 다만, 사건의 내용이나 성질 등에 비추어 소관부서장에 의한 수행이 효과적인 경우 소관부서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내외 지사장은 지사관련 소송업무를 수행한다.

③ 국내외 지사장이 소송 업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법무부서장과 협의 후, 소송 수행을 법무부서장에게 요청하거나 이관할 수 있다.

제6조(제소 및 응소 요청) ① 소관부서장은 소관업무에 관하여 소송으로 처리하여야 할 업무가 발생한 경우에는 법무부서장의 협조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법무부서장에게 소송대응 요청을 하여야 한다.

1. 사건 처리에 대한 기본 방침(소제기 및 응소 필요성 등 포함)
 2. 사건의 경위(제소 또는 피소 경위)
 3. 그 밖에 소송 수행에 필요한 자료
- ② 재산권 관련 소송의 경우 소관부서장은 승소 판결 시 집행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소 또는 응소 요청 전 가압류 등의 채권보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조치 필요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지급명령신청, 가압류, 가처분 또는 채권 강제집행 신청(압류 및 추심, 압류 및 전부), 경매신청, 제소전화해 신청 등 신청사건은 소관부서장이 수행한다.
- ④ 제3조제1호에 따른 소송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법무부서장은 소관부서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 해당 사건이 공사에 미치는 영향, 법적 대응의 중요성 등을 고려하여 해당 사건을 지원하거나 수행할 수 있다.

제7조(소송대리인의 선임) ① 법무부서장(소송 업무를 수행하게 되는 지사장, 소관부서장을 포함한다. 이하 본조에서 같다)은 소송 사건(가압류·가처분 신청 등 신청사건 등을 포함한다. 이하 본조에서 같다)의 중요도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변호사, 법률사무소, 법무법인 또는 법무조합(이하 “변호사”라 한다)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변호사 선임은 공개모집 방식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하여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1. 심급별 수임료가 2,000만원 이하(부가세 별도)인 경우
 2. 집행정지, 가압류, 가처분, 소제기 기간 경과 임박 등 긴급한 경우
 3. 유사사건 수행 경험 축적 등 전문지식이 축적되어 있는 특정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효율적인 경우
 4. 이미 소송대리인이 선임된 동일한 사건으로 심급 또는 상대방만 달리하는 경우
 5. 그 밖에 보안상 필요가 있는 등 소송사건의 성질상 공개모집 방식을 적용하기 부적절한 경우
- ③ 소송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에 변호사 협회의 표준 양식을 참고하여 소송위임계약을 체결하고 소송위임장을 교부한다. 다만, 변호사와 사전에 협의한 경우에는 별도의 소송위임계약서 및 소송위임장을 작성·교부할 수 있다.

제8조(공모의 방법) ① 공개모집 방식으로 대리인을 선임할 경우 경쟁방식(제한경쟁, 지명경쟁 포함)으로 선임하되, 그 선임 방법은 아래 각 호와 같다.

1. 공사는 공사 및 대한변호사협회 홈페이지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공지한다.
 2. 응모하려는 변호사는 제안서, 기타 평가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평가를 위하여 공사 내에 변호사 선임 심사위원회를 둔다. 변호사 선임 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은 아래 각 호와 같다.
1.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3인 이상 7인 이하로 하되, 외부 위원을 과반수로 한다.
 2. 위원장은 법무부서가 소속된 부서의 실장으로 한다.
 3. 위원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위원장이 지명 또는 위촉한다.
 - 가. 법무 업무에 식견을 갖춘 공사 소속 직원
 - 나. 대한변호사협회 등 관련 기관에서 추천하는 사람
 - 다. 기타 법률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등 응모자와 특수한 관계를 가진 위원은 해당 심사에서 제척된다.
- ③ 제안서 평가 방법 등 제1항에 따른 구체적 선임 방법은 사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9조(소송대리인 선임의 제한) ① 퇴직한 직원의 퇴직일로부터 2년 간은 퇴직한 직원을 수의계약방식으로 소

송대리인(법무법인 등인 경우에는 퇴직한 직원이 담당 변호사로 지정되는 경우를 말한다)으로 선임할 수 없다.

- ② 수의계약 방식으로 소송대리인을 선임할 경우에는 특정 소송대리인에게 사건이 편중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해당 연도 수의계약을 통한 소송위임 건수가 10건을 초과하는 경우 변호사 1인에 대한 수의계약 소송 건수가 공사 수의계약 소송건수의 1/2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정부법무공단법」에 의해 정부법무공단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제2항 본문에 따라 소송위임건수 산정시 원심 대리인을 상소심(항고, 재항고 등 포함)에서 재선임 하는 경우 또는 사건의 당사자가 같거나 쟁점이 법률상 공통되는 수 개의 소송(본안 소송에 부수된 신청사건 포함)이 제기된 경우에는 소송위임건수를 1건으로 본다.

- 제10조(협조)** ① 소관부서장은 소송업무가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 ② 소관부서장은 소송업무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소송사건의 원인되는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을 소송보조담당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소송보조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1. 소송수행에 필요한 각종 자료의 조사, 수집 및 제출
 - 2. 법원·수사기관 등에서의 증언·진술(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 3. 기타 소송 수행에 필요한 사항
 - ④ 소송과 관련된 공사의 임직원은 법원·수사기관 등에서의 증언·진술 등 소송의 원활한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11조(소송의 진행)** ① 법무부서장은 소송대리인이 요구하는 소송과 관련된 자료의 제출 기타 필요한 협조사항을 소관부서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 ② 법무부서장은 소송 진행상황 및 쟁점을 파악하고 수시로 소송대리인과 사건내용에 대하여 협의하도록 하며, 소송 진행 상황을 소관부서장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 제12조(소송 진행 중의 조치)** ① 소관부서장은 수행중인 소송사건이 판결 외의 방법으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해결방안을 법무부서장과 상호 협의한 후 결재권자의 결재를 받아 처리할 수 있으며 그 처리결과를 법무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② 법무부서장은 수행 중인 소송 사건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소관부서장에게 소송과 관련된 처분의 취소·변경을 비롯한 적절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 1. 동일 유형의 사건으로서 반복하여 패소한 선례가 있는 경우
 - 2. 소송 진행 중 드러난 사실 관계 등에 비추어 패소가 확실히 되는 경우
 - 3. 제출된 증언·증거 및 이와 관련한 법리 등에 비추어 패소가 확실히 되는 경우
 - 4. 소송 유지가 현저히 공익에 반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 ③ 소관부서장이 법무부서장의 제2항에 따른 요구를 수용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밝혀야 한다.

- 제13조(임직원 등에 대한 소송지원)** ① 공사는 임직원 등(공사와 특수고용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이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제3자로부터 피소된 경우 소관부서장 또는 해당 임직원 등의 신청에 따라 공사의 정당한 이익의 범위 내에서 소송대리인을 선임하고 소송비용을 지원하는 등 소송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한다.
- 1. 해당 임직원 등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인정되는 객관적인 사실이 있는 경우
 - 2. 해당 임직원 등이 배임, 횡령, 절도 또는 뇌물·금품수수·청탁금지법 위반 등 본인 또는 제3자의 이익취득과 관련된 형사소송의 당사자 또는 수사상 관련자가 된 경우

3. 성희롱·직장내괴롭힘·갑질 등 정당한 업무수행이라고 볼 수 없는 경우
 4. 그 밖에 공사가 소송지원 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
- 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소송비용은 다음 각 호에 따른 비용을 말한다.
1. 변호사 비용: 변호사 선임비용, 법률상담·법률자문, 문서작성, 변호인 동행 등에 따른 비용 등
 2. 소송 부대 비용
 - 가. 민사소송: 인지대, 송달료, 증인신청비용, 감정비용 등 민사소송 관련 법령에서 소송비용으로 인정되는 비용
 - 나. 형사소송: 증인신청비용, 감정비용 등 형사소송 관련 법령에서 소송비용으로 인정되는 비용
 3. 그 밖에 소송 및 수사과정에서 적극적인 주장·입증을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
- ③ 본조에 따른 소송지원은 공사가 임직원 등에 대한 소송지원을 결정한 이후 소요된 비용에 한한다.
- ④ 소송지원을 받은 임직원 등은 공사로부터 지원받은 소송비용의 범위 내에서 소송 상대방으로부터 회수하는 모든 소송비용을 공사에 귀속시켜야 한다.
- ⑤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송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임직원 등은 이미 지급받은 소송비용 전액을 반납하여야 한다.
1. 소송 지원 중 제1항 단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견되는 때
 2. 소관부서장 또는 해당 임직원 등이 소송지원 신청을 철회한 때
 3. 그 밖에 거짓으로 소송지원을 신청하였다는 사실이 발견되는 등 소송지원을 중단하여야 할 사유가 발견된 때
- ⑥ 법무부서장은 제1항에 따른 해당 임직원 등의 소송지원 신청에 대하여 제1항 단서 해당여부, 제5항 해당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울 때에는 결재권자의 승인 전에 제19조에 따른 소송비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제3장 소송대리인의 보수 등

- 제14조(소송대리인의 위임보수)**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한 경우 변호사의 위임보수(착수금과 승소보수로 한다)와 기타 소송비용 등으로 구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각 심급별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소송의 내용, 중요도, 난이도 및 그 밖의 사항을 고려하여 별도 협의하여 위임보수를 정할 수 있다.
1. 변호사의 착수금은 별표 1 변호사 착수금 산정요율표에 따라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소송 진행 중 소송물가액이 확장될 경우에는 확장된 부분을 최초 소송물가액에 합산하여 변호사 보수를 산정하고 그 차액의 보수를 추가로 지급할 수 있으며, 별도 협의가 있을 경우 그에 따른다.
 3. 승소(일부 승소 포함한다)에 따른 성공보수는 착수금 한도 내에서 승소율에 따라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제15조(기타 소송비용)** 소송사건의 위임에 따라 위임보수 이외에 「민사소송법」, 「민사소송비용법」, 「민사소송 등 인지법」 등이 정하는 인지대, 송달료, 검증료, 감정료, 출장비 기타 소송 수행상 필요한 비용 등은 별도로 지급한다.

제4장 소송결과에 따른 조치

- 제16조(판결에 따른 조치)** 법무부서장은 각 심급마다 그 결과를 신속히 소관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소관부서장은 항소 여부 결정 등 판결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17조(승소판결에 따른 조치)** ① 제16조에 의하여 승소(일부 승소를 포함한다) 판결(조정·강제조정결정·화해권

고결정 등을 포함한다)의 통보를 받은 소관부서장은 판결내용에 따라 채권의 행사, 강제집행 등 필요한 제반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소관부서에서 실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소관부서장은 법무부서장에게 협조를 구하여 법무부서장이 실행하도록 하며, 법무부서장은 그 결과를 소관부서장에게 통보한다.

- ② 소관부서장은 채무자의 행방불명, 무자력 및 기타 사유 등으로 그 강제집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당해사건을 종결처리하며, 「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사무규칙」(기획재정부령) 제10조(채권의 대손처리) 및 공사 「회계규정시행세칙」 제31조(대손처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금액에 대하여 결손처분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8조(소송비용회수) ① 법무부서장은 승소 판결 최종 확정일로부터 30일 내에 소송비용액확정결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 ② 법무부서장은 소송비용액 확정일로부터 30일 내에, 30일 이상의 기한을 정해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을 납부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결재권자의 승인을 받아 소송비용을 회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상대방에게 경제적 자력이 없는 경우(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채무자 회생 및 파산·면책 등 경제적 어려움에 대해 소명이 가능한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한다)
2. 소송비용 회수에 소요되는 비용보다 회수해야 할 비용이 적은 경우
3. 상대방이 사망, 실종, 행방불명 등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4. 공익소송 등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이 적정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상대방의 소재파악이 불가능한 경우
6. 소송대리인이 직원인 사건으로 소송비용이 경미한 경우

제19조(소송비용심의위원회) ① 제18조제3항제4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결재권자의 승인 전에 소송비용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 ② 소송비용 심의위원회의 구성은 아래와 같다.

1. 위원장 및 내부 위원: 「사규규정」 제22조에 따른 사규심의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과 같다.
2. 외부위원: 위원장이 위촉하는 1인

- ③ 소송비용 심의위원회의 심의방법 등은 「사규규정」 사규심의위원회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제20조(포상 등) 소송대리인으로 선임된 직원이 소송수행결과 일부승소를 포함하여 확정승소판결로 인하여 공사 경영에 기여한 경우에는 사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창 및 포상을 수여할 수 있다.

제21조(패소판결에 따른 조치) ① 공사가 패소(일부 패소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소관부서장은 제6조제1항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무부서장에게 상소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상소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대법원 판례에 따라 상소하여도 승소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소의 이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상소하지 아니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 ② 제1항에 따라 법무부서장에게 상소를 요청하는 경우, 가집행선고부 판결로서 가집행의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소관부서장은 법무부서장에게 강제집행정지신청을 요청하는 등 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2조(패소판결의 원인규명 등) ① 법무부서장은 패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원인을 규명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을 때에는 관련부서에 통보하고, 관련부서는 직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등 구상권 행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해당 직원 등에 대하여 구상권 행사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② 법무부서장은 패소사유가 제도의 결함으로 인한 것일 때에는 제도개선 또는 사규개정 건의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에 통보할 수 있다.

제23조(판결금 등의 지급) 패소(일부 패소를 포함한다)가 확정될 경우 판결금·소송비용액의 지급을 포함한 판결·결정에 따른 의무의 이행은 소관부서장이 한다.

제5장 법률자문

제24조(법률자문) ① 소관부서장은 업무수행 중 법률적인 사항에 대하여 법무부서장에게 법률자문을 구할 수 있다.

- ② 공사의 업무수행 중 자문변호사를 포함한 외부 변호사에게 법률자문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관부서장은 법무부서장에게 문서로 요청을 하고 법무부서장은 외부 변호사에게 자문을 의뢰한다.
- ③ 법무부서장은 제2항에 따라 외부 변호사로부터 자문 받은 자료를 기록·보관하여야 하고 자문과 관련한 제비용을 집행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법무부서장은 소관부서장과 협의하여 소관부서장으로 하여금 위 제비용의 집행을 처리하게 할 수 있다.
- ④ 필요한 경우 소관부서장은 사전에 법무부서장의 협조를 구하여 외부 변호사에게 직접 자문을 의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법률자문 결과물은 해당부서의 장이 보관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법무부서장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 ⑤ 제4항에 따른 자문비용 등 제비용의 집행은 소관부서에서 집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법무부서장과의 협의에 따라 법무부서에서 집행할 수 있다.

제25조(자문변호사의 위촉) 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포함한 공사의 업무전반에 관한 법률적인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외부 변호사를 자문변호사를 위촉할 수 있다.

1. 공사에 관련된 소송에 관한 사항
 2. 공사의 업무와 관련된 법령의 해석·적용에 관한 사항
 3. 계약 등 주요 서류의 검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공사가 요청하는 사항
- ② 자문변호사 위촉 기간은 2년 이내로 하되 최대 2회 이내로 연임할 수 있다. 단, 공개모집 절차를 통해 위촉된 경우 그때부터 신규 위촉된 것으로 본다.
- ③ 자문변호사에 대한 보수는 별도로 체결한 계약내용에 따른다.
- ④ 자문변호사는 공개모집 절차 또는 내·외부의 추천을 받아 공사 업무와 관련한 전문성, 경력, 업무수행실적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 ⑤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자문변호사를 위촉할 경우, 지원자는 별지 제1호 서식 한국관광공사 자문변호사 지원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8조제2항에 따른 변호사 선임 심사위원회에서 별지 제2호 서식 평가표에 따라 평가한다.
- ⑥ 자문변호사 위촉에 따른 자문기관과의 자문계약은 별지 제3호 서식 법률자문계약서에 따르되, 필요한 경우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 ⑦ 정부법무공단의 경우에는 제2항, 제4항, 제5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⑧ 공사는 소속 기관의 규모(변호사수, 매출액 등), 소재지, 전문분야 등에 따라 구분하여 자문변호사를 위촉할 수 있다.

제26조(청렴서약 등) 공사 자문변호사로 위촉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4호 서식 청렴서약서

2. 별지 제5호 서식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자문변호사 지원시에 제출한 경우 생략 가능)
3. 변호사 징계정보 증명원

제27조(자문변호사 결격 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자문변호사로 위촉될 수 없다.

1. 「변호사법」 제90조제3호에 따른 정직 처분을 받은 자로서 정직 처분 기간 중에 있는 자
2. 위촉일 기준 제1호에 따른 정직 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3. 위촉일 기준 2년 이내에 「변호사법」 제90조제4호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
4. 위촉일 기준 1년 이내에 「변호사법」 제90조제5호에 따른 견책 처분을 받은 자

제28조(평가) ① 공사는 별지 제6호 서식 법률자문 평가표에 따라 자문변호사의 성실성, 소송 및 자문 수행 능력 등을 수시로 평가할 수 있다.

② 공사는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 성실성 및 수행 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선임·위촉을 해지하거나 재선임·위촉을 제한할 수 있다.

제29조(해촉) 공사는 자문변호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때에는 자문변호사를 해촉할 수 있다.

1. 공사 자문변호사로서의 업무를 기피 또는 해태한 경우
2. 위촉 기간 중 제27조에서 정한 자문변호사 결격 사유에 해당할 경우
3. 공사의 동의 없이 공사가 당사자인 소송의 상대방으로부터 사건을 수임한 경우 등 이해상충의 우려가 있는 경우
4. 공사 자문변호사로서 품위를 손상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5. 사정변경으로 자문변호사 위촉 지속이 곤란한 경우

제6장 법무 심사

제30조(심사대상) ① 소관부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안에 대하여 법무심사를 받아야 한다.

1. 「이사회운영규정」 제2조제1항 제4호, 제5호, 제8호의 부의사항
 2. 건당 추정금액 2,000만원을 초과하는 계약의 체결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제2호에 준하는 비용지출이 예상되는 업무협약 등의 체결 및 변경에 관한 사항
 4. 사장이 법무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소관부서장에게 지시한 사항
- ② 소관부서장은 소관 업무 중 법무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법무부서장에게 법무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법무부서장과 쟁점에 관하여 사전 협의한 내용에 한한다.
- ③ 법무 심사는 「문서규정」 제27조에 따른 협조의 방법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법률 자문게시판·전자계약시스템 이용 및 기타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제31조(심사사항) 법무부서장은 소관부서의 심사대상문서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1. 법령 등의 저촉 여부
2. 계약서·협약서 내용의 법적 타당성 및 법적 위험성
3. 분쟁발생위험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7장 기타

제32조(명단 등 공개) 공사는 매 분기별로 자문변호사 현황(변호사 성명, 소속 법무법인, 위촉기간) 및 소송대

리인별 사건 수임 건수 등을 공사 인터넷 홈페이지,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알리오) 등에 공개한다.

부 칙(2021. 10. 2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10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8조의 규정은 2022. 1. 1.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이 규정 시행 전에 위촉된 소송수행변호사·자문변호사는 이 규정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
다만, 위촉 기간은 종전 계약 등에 따른다.

한국관광공사 자문변호사 지원서

소속기관:

성명:

위 본인은 한국관광공사 자문변호사 공모에 따른 지원서를 제출합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항 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기간
•성명, 생년월일 등 지원서 상 개인 정보 기재항목 일체 •제출서류에 기재된 개인정보 일체	자문변호사 위촉	(위촉 시) 해촉일로부터 <u>1년</u> (미위촉 시) <u>즉시파기</u>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위 항목 동의를 거부할 경우 자문변호사로 위촉될 수 없습니다.

☒ 위 항목에 대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예 ☐ 아니오)

☒ 자문변호사 위촉 또는 소송대리인 선임시 자문변호사 현황(변호사 성명, 소속 법무법인, 위촉기간) 및 소송대리인별 사건 수입 건수 등이 공사 인터넷 홈페이지,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알리오) 등에 공개됩니다. (☐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 자문변호사 결격 사유[변호사법 제90조에 따른 징계 전력: ① 정직 기간 중 ② 정직 기간 종료일로부터 2년 내 ③ 과태료 처분일로부터 2년 내 ④ 견책 처분일로부터 1년 내]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합니다. (☐ 예 ☐ 아니오)
- 위 기재사항과 제출서류는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 예 ☐ 아니오)

년 월 일

지원자 : ○ ○ ○ (인)

한국관광공사 귀중

1. 지원자

성 명			생년월일		
연 락 처			E-mail		
변호사 자격	시험 종류		변호사자격 취득일		
	사법시험 / 변호사시험 ()회		년 월 일		
소속 기관 (법무법인 등)	기관명				
	대표자				
	주소				
	연락처				
	재직변호사 수				
전공사항	기간		전공		학위
			대학교		
			대학원		
법조경력	근무처	근무부서	직위	담당업무	근무기간
* 판사, 검사, 법무법인, 사내변호사 근무경력 등 법조 경력을 기재합니다.					

한국관광공사 업무와 관련된 활동	기 간	내 용	비고
* 한국관광공사와 관련된 주요 연구활동, 강의 경력, 전문교육 이수, 관련 기관 업무 참여 등 기재			
* 한국관광공사 업무는 홈페이지(www.visitkorea.or.kr) 참조			
기타 경력	기 간	내 용	비고
* 각종 위원회 위원·자문 활동경력 등			
기타 참고사항			

2. 주요 실적

〈작성요령〉

-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소송·자문 등 실적 기재(현재 수행중인 실적 포함, 최근 실적 순으로 작성)
- 관련 업무 수행 실적과 일반 업무 수행 실적을 나누어 기술하되, 각 2p 이내로 작성
-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한국관광공사 포함) 실적 위주로 기재하되, 민간 기업 관련 실적도 기재 가능

□ 관련 업무 수행 실적

※ 국가계약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부동산개발 관련 업무, 저작권·상표권, 법령입안, 국제계약체결 및 한국관광공사 관련 실적

[illegible]

□ 일반 업무 수행 실적

[illegible]

3. 직무수행 계획

〈작성요령〉

- 향후 한국관광공사 자문번호사 직무 수행 계획을 자유 양식으로 기재(1p 이내)

평 가 표

■ 지원자명 : (소속기관:)

○ 계량평가

평가항목	세부기준					배점	점수
법조경력	1년 미만	1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15년 미만	15년 이상	10	
	2	4	6	8	10		

○ 정성평가

평가항목	세부기준	배점	점수
공사 사업 이해도	○ 국가 정책 사업 및 관광 사업에 대한 이해 ○ 공공기관 및 기업 일반에 대한 이해 ○ 한국관광공사의 사업·역할·기능에 대한 이해	20	
전문 역량	○ 공사 자문 변호사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력과 전문 역량 (공사유관업무: 국가계약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부동산개발 관련 업무, 저작권·상표권, 법령입안, 국제계약체결 등)	25	
수행 실적	○ 공공부문 소송, 자문수행 실적 ○ 성공적 소송, 자문수행 실적 ○ 폭넓은 시각을 확보할 수 있는 다양한 업무 수행 실적·경력	25	
직무수행계획	○ 직무 수행계획의 적합성 및 충실도 ○ 적극적 고객 마인드	20	
합계		90	

종합 점수	배점	점수
	100	

평가위원 성명 : (서명)

법 률 자 문 계 약 서

제1조(위촉) 한국관광공사(이하 “공사”)는 아래와 같이 자문기관 소속 변호사를 자문변호사로 위촉한다.

자문기관	
자문변호사	
위촉 기간	

제2조(자문 변호사의 업무) 자문변호사의 업무는 아래 각 호의 업무를 포함한 공사의 업무전반에 관한 법률적인 자문으로 한다.

- 1. 공사에 관련된 소송에 관한 사항
- 2. 공사의 업무와 관련된 법령의 해석·적용에 관한 사항
- 3. 계약 등 주요 서류의 검토에 관한 사항
- 4. 그 밖에 공사가 요청하는 사항

제3조(신의성실 및 품위유지) ① 자문기관 및 자문변호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신의에 따라 성실히 공사가 의뢰한 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 자문기관 및 자문변호사는 공사로부터 의뢰받은 사무의 처리에 있어 변호사로서의 품위와 직업 윤리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4조(보수) ① 자문료는 자문기관 소정의 변호사별 시간당 요율에 따르되, 사전 협의가 있을 경우 사전 협의 내용에 따른다.

② 공사가 자문기관에 소송 등 송무를 위임할 경우 그 보수는 사건의 중요성과 난이도 등에 따라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정한다.

제5조(준수 사항) ① 자문기관과 자문변호사는 공사의 사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얻은 일체의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 또는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공사”의 동의가 있거나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자문기관 및 자문변호사는 공사의 동의가 없는 한 공사가 위임한 사무에 관하여 이해충돌의 우려가 있는 업무를 수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이해 충돌의 우려가 없거나 공사가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위촉현황의 홈페이지 공개 동의) ① 공사는 자문변호사 제도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위해 자문변호사 현황(변호사 성명, 소속 기관, 위촉기간) 및 소송대리인별 사건 수임 건수 등을 공사 인터넷 홈페이지,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알리오) 등에 공개할 수 있다.

② 자문기관과 자문변호사는 제1항에 동의한다.

제7조(기타) ① 자문변호사의 퇴사·사임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공사와 자문기관은 협의하여 자문변호사를 변경할 수 있다.

② 자문기관·자문변호사는 공사가 의뢰한 자문·소송 등 업무에 관하여 전담변호사 또는 전담팀을 지정하여 해당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2021. 12. .

공사

자문기관

한국관광공사

강원 원주시 세계로 10

대표자 사장 (인)

(인)

청렴서약서

본인은 한국관광공사의 자문변호사로서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겠으며, 직무와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하고 본 청렴서약서를 제출합니다.

1. 위촉 또는 선임 기간 중 범죄사실, 비위행위 등의 부당한 행위를 하지 않으며, 부패 또는 이해충돌이 발생하거나 사적 이해관계 개입 시 이를 통보하고 해당 사건을 회피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2. 업무수행 전 과정을 통하여 취득한 귀 공사의 업무상 비밀을 누설하지 않겠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뇌물공여나 청탁으로 관계직원을 회유하여 편의를 제공받는 등 불법행위를 하지 않고, 관계직원의 어떠한 불법·부당한 요구를 단호히 거부하겠습니다.
3. 부당한 영향력 행사 및 이를 통하여 이익을 추구하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겠습니다.

년 월 일

소속:

성명: 변호사

(서명 또는 인)

한국관광공사 귀중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항 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기간
• 성명, 생년월일 등 지원서 상 개인정보 기재 항목 일체 • 제출서류에 기재된 개인정보 일체	자문변호사 위촉	해촉일로부터 <u>1년</u>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위 항목 동의를 거부할 경우 자문변호사로 위촉될 수 없습니다.

☞ 위 항목에 대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예 ☐ 아니오)

☞ 자문변호사 위촉 또는 소송대리인 선임시 자문변호사 현황(변호사 성명, 소속 법무법인, 위촉기간) 및 소송대리인별 사건 수입 건수 등이 공사 인터넷 홈페이지,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알리오) 등에 공개됩니다. (☐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년 월 일

소속:

성명: 변호사

(서명 또는 인)

한국관광공사 귀중

법률자문 평가표

- 1. 건명:
 - 2. 자문기관:
 - 3. 평가표
- ☐ 의뢰부서 평가(60)

평가항목	평 가 내 용	점수
정확성·전문성(20)	질의 내용에 대해 전문성을 갖추고 질의 내용에 부합하는 자문이 이루어졌는가 매우 그렇다(20) 그렇다(16) 보통이다(12) 그렇지 않다(8) 매우 그렇지 않다(4)	
유용성(20)	자문 내용이 업무추진, 의사결정에 유용하였는가 매우 그렇다(20) 그렇다(16) 보통이다(12) 그렇지 않다(8) 매우 그렇지 않다(4)	
전반적 만족도(20)	자문의 적시성, 자문 내용 등에 대해 전반적으로 만족하는가 매우 그렇다(20) 그렇다(16) 보통이다(12) 그렇지 않다(8) 매우 그렇지 않다(4)	
소 계		
평가자 소속:		성명: (서명)

☐ 법무부서 평가(40)

평가항목	평 가 내 용	점수
소통도(20)	공사와 적극적으로 소통하여 우리 공사의 사정 및 사건 개요 등을 정확하게 파악하였는가 매우 그렇다(20) 그렇다(16) 보통이다(12) 그렇지 않다(8) 매우 그렇지 않다(4)	
전반적 평가(20)	자문의 난이도 등을 종합 고려하였을 때 자문 요청 사항에 대해 충실히 검토하고 적절한 방안을 제시하였는가 매우 그렇다(20) 그렇다(16) 보통이다(12) 그렇지 않다(8) 매우 그렇지 않다(4)	
소 계		
평가자 소속:		성명: (서명)

종합 점수	배점	점수
	100	

* 평가결과 : 최우수(90점 이상), 우수(80점 이상~90점 미만), 보통(60점 이상~80점 미만), 미흡(60점 미만)

[별표 1]

변호사 착수금 산정요율표

소 가	지급기준액	산 정 방 법
500만원 이하	100만원	-
500만원 초과 2,000만원 이하	150만원 ~ 400만원	-
2,0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	401만원 ~ 610만원	400만원 + (소송물가액 - 2,000만원) × 7/100
5,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611만원 ~ 860만원	610만원 + (소송물가액 - 5,000만원) × 5/100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861만원 ~ 1660만원	860만원 + (소송물가액 - 1억원) × 2/100
5억원 초과	1661만원 ~	협의결정(100만원 단위 이하 절사)